

제주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9나1038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훈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 종결 2020. 1. 22.

판결 선고 2020. 2. 12.

제 1 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8가단6203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6.부터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7. 5. 18:19:33경 인터넷뱅킹으로 원고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원고의 직원이 다른 업체에 송금할 것을 수취인의 계좌를 잘못 입력하여 착오로 피고에게 위 7,000만 원이 송금된 것이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위 7,000만 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착오로 위 7,0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 증인 H의 일부 증언 등은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D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사이의 아래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률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7,000만 원은 G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원고(H는 G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사내이사이며, 원고 대표이사 I의 배우자이다)가 H와 D의 합의에 따라 D이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으로 송금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D은 2016. 12. 7. 피고와 피고에게 제주시 E 지상 17세대 규모의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를 35억 7,540만 원에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3. 9.경 공사금액을 37억 9,335만 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D과 피고는 2016. 12. 16.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과 사이에 J이 D과 피고사이에 체결된 공사대금 35억 7,540만 원인 공사도급상의 발주자 지위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D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자, D은 2018. 5.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공사잔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향후 건물의 하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하자청구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②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에 대하여 G은 2016. 12. 8. D과 사이에 G이 7억 원을 투자하고, 6억 원을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D은 2018. 4. 15.경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투자자인 G의 대표이사 H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분양되지 않은 15세대를 48억 원(G의 투자금 및 수익금 13억 원을 합한 금액이다) 인수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고, H이 동의하여 2018. 5. 23. 원고 명의로 이 사건아파트 중 15세대를 48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위 15세대에 대해 2018. 6. 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D이 원고에게 위 15세대의 인수를 제안한 내용에는 피고에 대한 잔여공사대금이 4억 3,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D은 2018. 4. 18.경 H에게 '이 사건아파트 공사비 미지급현황'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는데, 전체 액수가 428,888,963원이다), '미지급 공사대금 4억 3,000만 원 중 2억 1,000만 원은 분양된 2세대의 분양대금과 상계처리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D과 G(H)의 위 합의에 따라 원고는 인수대금 48억 원 중 G이 D과 체결한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과 그에 대한 수익금을 합한 13억 원을 제외한 35억 원을 J에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소장 등 제1심법원에서는 원고의 직원이 공사대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다른 업체에 입금하여야 하는 것을 착오로 피고 계좌로 입금하였다거나 경리직원의 실수로 입금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2018. 7. 16.자로 발송한 내용증명(갑 3호증)도 같은 내용이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원고는 아래 예비적 청구에 대한 주장 요지(특히 H과 D이 추가로 정산한 결과 7,000만 원이 더 공제되어야 한다는 부분)와 같이 주장을 변경하였고, 더불어 피고와 D이 피고의 자금 사정이 어려운상황에서 원고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피고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했다고도 주장하고 있으며, 그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에서 착오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7,000만원 외에 아래 주장에서 보는 차용증에 기한 7,000만 원까지 포함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총 1억 4,000만 원이라고 주장하였다(이 법원 증인 H은 2019. 11.27. 변론기일에서 'J이 최종 정산하고 남은 환급금으로 약 1억 1,300만 원이 발생하여 D이 J으로부터 위 돈을 받아 H에게 반환하기로 하였고, 그중 7,000만 원은 피고의 자금 사정을 이유로 피고가 1년만 사용하고 반환하겠다고 하여 피고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7,0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증언하였고, 피고는 위 증인신문 후 위주장을 다시 H의 증언 내용과 같이 변경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 주장의 변경된 내용, 변경 경위 및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렵다.

(3) 원고의 변경된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인수하면서 J에 35억 원을 지급한 후, J이 최종정산한 결과 D이 약 1억 1,300만 원을 환급받게 되었고, D이 이를 G 또는 H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중 7,000만 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들어맞는 증거로는 이 법원 증인 H의 증언이 유일한데, 그것 외에 D이 J으로부터 약 1억 3,000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환급받게 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D과 G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 인수약정에 의하면, 인수대금총 48억 원 중 13억 원은 G의 투자금과 수익금이며, 나머지 35억 원이 G이 J에 지급하여야 할 돈이므로 G로서는 35억 원만 J에 지급하고, D로서는 위 15세대에 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 D이나 G 모두 위 인수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D이 J으로부터 1억 1,300만 원을 환급받는다 고 하더라도 다시 G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H의 지위나 이해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원 증인 H의 이 부분 증언도 믿기 어렵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H과 D의 합의에 따라 48억 원에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 15세대를 인수하되, 그 중 G의 투자금과 수익금 13억 원을 공제한 35억 원을 J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H과 D이 다시 비용을 정산하여 보니, 7,000만 원이 추가 로 공제되어야 됨을 확인하였고, D이 H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D의 배우자가 대표이사인 피고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H의 양해하에 피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의 차용증(갑 5호증을 말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거래 관계가 없어 회계에 반영하기 위해 실제 차용과는 별도로 7,000만 원을 송금하되, 바로 반환받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반환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7,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위 주장에 들어맞는 듯한 갑 6호증의 기재, 증인 H의 일부 증언은, 앞서본 사실관계, 원고의 대표이사와 H의 관계 내지 H의 지위, K의 지위 등에 비추어 믿기어렵고, 그 밖의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 반환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재원, 판사 정승진, 판사 이선희